

노래방, PC방, 실내 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 지원금 지원계획

□ 추진배경

- (추진배경)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 긴급지원 필요,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 가중

□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노래방, PC방, 실내 체육시설
- (해당기간) 2020. 3. 30. ~ 4. 5.(7일간)
 - 대전광역시 소재하고 5개 자치구에 등록된 노래방, PC방, 실내 체육시설 업소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중 휴업 권고에 따라 영업중단을 이행한 업소*
 - * 휴업여부 증빙은 홍보기간을 제외한 3.30.~4.5. 기간에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기록 확인서상 매출이 없는 업소
- (지원금액) 업소당 50만원(소요재원은 시 재난안전기금 사용)
 - * 자치구에 재난관리기금 교부 후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
- (지원절차) 자치구 신청서 접수 → 접수 서류 검토 → 피해 지원금 지급
- (신청방법) 해당 구청 담당부서 우편접수 및 FAX 신청(신청서 붙임)
 - * 자치구별 담당부서 및 신청방법 등 홈페이지 게시
- (신청기한) 2020. 4. 6(월) ~ 4. 17(금) 18: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□ 향후계획

- 대상 업소 현장 점검 시 피해업종 지원 안내 및 홍보(자치구 홈페이지 등)
- 피해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

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서

본 업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동참하여 2020.4.5.일까지 영업장 운영을 자진 중단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1. 사업장명 :
2. 대표자명 :
3. 사업자등록번호 :
4. 업 종 : 노래방, PC방, 실내체육시설
5. 신청사유 :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 영업장 운영중단 피해 지원
6. 신청금액 : 일금오십만원(₩500,000)

위 금액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청구인 : (인)

(HP :)

계좌번호 :

예 금 주 :

붙임 1. 통장 사본 1부.

2.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기록 확인서(2020.3.30.~4.5.) 1부.

담당자	팀 장	과 장

○○구청장 귀하